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62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22428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6224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김대영, 김재연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23. 8. 10.

판결선고 2023. 9. 14.

주문

- 선정자 C은 원고에게 8,877,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1.부터 2023. 1.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선정자 C과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2018.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C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 24. 접수 제1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예비적으로, 선정자 C과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8,877,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8,877,0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2. 선정자 C에게 합계 8,877,05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22. 10. 10. 선정자 C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 선정자 C이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2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 24. 접수 제19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 1. 2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선정자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과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8,877,050원을 초과하는 다른 재산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C은 원고에게 차용금 8,877,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22.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선정자 C에게 송달된 2023.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3. 3.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27. 3. 3.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C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9692 판결 등 참조), 선정자 C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선정자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감액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부분이 아니어서 원물반환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지는 아니하므로¹⁾, 주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증여를 전부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명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주위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석

선 정 자 명 단

1. B
2. C. 끝.

별지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공주시 대 192㎡
2. 충청남도 공주시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지상

철골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1층 창고 46.2㎡

1층 주차장 44.12㎡

2층 단독주택 93.5㎡

1)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